



[인터넷] 특허권, 정보화시대 선인가 역인가

미 국 온라인 기업들이 앞다투어 특허획득 경쟁에 나섬에 따라 세계 인터넷업체에 특허 선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미국 특허당국에 신청된 온라인 특수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 신청건수는 2천7백여건으로 98년에 비해 무려 2배로 늘었으며 올해는 6천여건에 이를 전망이다.

이중 평균 65%가 특허를 획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특허 경쟁이 가히 전쟁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온라인 기업들의 특허 신청대상은 주로 인터넷상에서만 이용되는 무형의 특수사업방식으로 온라인이나 가상현실이 아닌 오프라인 및 실제현실에서는 너무 상식적인 것이어서 특허로 인정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프라이스라인닷컴(Priceline.com)은 소비자들의 가격제시방법, 아마존닷컴(Amazon.com)은 원클릭 지불 방식, 사이버골드(CyberGold)는 광고에 관심을 기울인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각각 특허를 획득했다.

이처럼 인터넷 기업들이 앞다투어 특허를 획득하는 데는 특허 획득 여부에 따라 주가나 사업 수익이 좌우될 뿐 아니라 특허전쟁에서 패했다가는 자칫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 한 기업이 특허를 획득하면 그 기업의 주가는 상승세를 타는 동시에 경쟁기업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일쭤다.

또 특허를 획득한 기업에 벤처자금이 몰리기도 하며 기업은 획득한 특허를 거래하거나 사업활동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도 있다. 특허 전문 변호사인 토머스 필드 2세는 “특허는 망치와 같아서 집짓는 데 사용할 수도 있으나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데 쓸 수도 있다”며 “점점 특허와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허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보화시대의 아이디어를 산업화시대의 철이나 기타 주요원료에 비교한다. 광산에 울타리를 치듯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아이디어를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특허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온라인 관련 특허들이 지나치게 남발돼 자칫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T&T가 지난 98년 신청해 지난주 획득한 미 특허 6,085,231호는 e메일 주소를 통해 음성 메일을 전달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 특허가 인정됨으로써 이미 음성메일 전달사업을 하고 있는 샌메테오, 원박스닷컴(Onebox.com)에는 비상이 걸렸다. 브리티시 텔레콤(BT)은 최근 자체 지적소유권 보유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결과 하이퍼링크 방식에 대해 미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주요 17개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체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할 것

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이 하이퍼링크 방식은 BT가 특허를 신청한 지난 89년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며 이에 대한 사용료 지불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여기다 인터넷 특허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심사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미국 특허심사국에서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현재 38명에 불과하며 이나마 내년에는 의회의 긴급조치로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특허가 해당 기술의 실제 발명가나 아닌, 이를 제일 처음 적용했거나 특허

신청한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인터넷 기술의 급속한 변화 발전 등으로 인해 해당 기술의 진정한 고안자가 누구인지, 유사 기술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혁신의 과실을 엉뚱한 제3자가 가로채고 있다는 것이다.

붓물처럼 터지고 있는 특허가 인터넷 시대의 혁신을 자극하는 '선'이 될지, 오히려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을 저해하는 '악'이 될 것인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새너제이 AP/연합뉴스)

출처 한겨레신문

[해외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대책] 진출국에 권리등록

우 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이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의 특허기술이나 유명상표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일이 빈번했다. 이에 대한 단속이나 법적 조치도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않아 외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국이라는 지적을 자주 받아 왔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이미지도 매우 나빴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 기업들 역시 과거 우리나라에서 외국 기업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지적재산권 침해문제에 봉착하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알아본다.

1. 사전방지대책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저작권, 그리고 영업비밀 등이 있다. 이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은 대부분 국가에 등록,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국가별로 독립적으로 보호되며, 국가간 지적재산권은 각각 별개의 권리로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저작권의 경우는 예외) 따라서 국내 기업으로서는 수출 또는 직접투자 등을 통해 진출하려는 해



당 외국에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등록하는 일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우선 해당 외국 특허청 등에 자사의 지적재산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리가 먼저 등록되거나 출원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실제로 진출한 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인 결과 자사의 지적재산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권리가 제3자에 의해 먼저 등록되거나 출원돼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안을 국내 또는 현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후대응방안

해외진출 이후에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이 발견되거나 혹은 해당 외국의 제3자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때가 있다. 국내 기업이 이미 해외에 확보한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이 발견되는 때에는 해당 외국의 법률사무소를 통해 침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이 제기되는 때에는 역시 해당 외국 법률사무소를 통해 해당 외국 법제하에서 가능한 대응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외국에 등록돼 있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최근 특허청에서는 해외지식재산 보호센터를 설

치,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여러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해외진출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해외지식 재산 보호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맞춰 해외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애써 자본과 노력을 들여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은 해당 외국에서의 침해품의 출현으로 국내 기업 제품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제품 수명이 단축돼 투자 대가를 회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해당 외국의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 침해의 주장이 제기되면 이미 결정된 수출 또는 해외진출 자체가 무산되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사전에 이러한 점들을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예측하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해외진출 이후에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 처 매경 Econo

발행 2000-08